

우리나라 화재보험 요율제도

김 영 육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 부장

1. 소화설비규정과 소화설비할인

지난 1986년 9월 15일자로 개정인가된 화재보험 요율서상의 소화설비규정은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가 보험요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보험공사사장의 인가를 받은 소화설비규정에 따라 한국화재보험협회의 검사에 합격한 소화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 및 그 수용동산에 대하여 소화설비할인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른 소화설비할인에 대하여는 「소화설비규정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의 검사에 합격한 소화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 및 그 수용동산에 대하여 소화설비할인을 한다」라고 규정하여 요율산정의 원칙의 하나인 방재의 원칙 혹은 예방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자보호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1986년 12월 27일자로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에서 발간한 소화설비규정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화설비규정으로는,

1. 초기소화설비규정
2. 소화전설비규정
3. 가반식동력소방펌프설비규정
4. 자동화재경보설비규정
5. 스프링클러설비규정

〈표 1〉 소화설비규정

1	초기 소화 설비 규정	1967. 9. 14 제정 (재이보 1223 - 1645) 1980. 12. 23 개정 (보 이 1234 - 1200)
2	소화전설비규정	1967. 9. 14 제정 (재이보 1223 - 1645) 1980. 12. 23 개정 (보 이 1234 - 1200) 1982. 5. 7 개정 (심의이 520 - 1884)
3	가반식동력소방 펌프 설비규정	1967. 9. 14 제정 (재이보 1223 - 1645)
4	자동화재 경보 설비규정	1967. 9. 14 제정 (재이보 1223 - 1645) 1982. 5. 7 개정 (심의이 520 - 1884)
5	스프링클러 설비규정	1972. 1. 1 제정 1977. 9. 14 개정 1983. 4. 1 개정 (심의이 520 - 1524)
6	자동화재 속보 설비규정	1977. 7. 27 제정 (보 험 1223 - 1013)
7	포소화설비 규정	1977. 7. 27 제정 (보 험 1223 - 1013) 1986. 12. 27 개정 (손 심 520 - 9073)
8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규정	1983. 6. 28 제정 (심의이 520 - 3100)
9	할론 1301 소화설비 규정	1984. 10. 2 제정 (심 이 520 - 6064)

6. 자동화재속보설비규정
7. 포소화설비규정
8. 이산화탄소소화설비규정
9. 할론 1301소화설비규정등이 있는 바 위 여러 규정등은 그간 소방법등 관계법규의 변동이라던가

보험여건의 변동·증에 의하여 그간 수차례 개정되었던지 혹은 신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참고로 그 번경연력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또한 현재 이 가별아 사용중인 소화설비 할인률은

〈표 2〉 소화설비 할인률표

소화설비 종류		할인률	
1. 우외 소화전 설비	갑	기본요율의 15%	
	을	기본요율의 12%	
	병	기본요율의 8%	
2. 우내 소화전 설비	갑	기본요율의 10%	
	을	기본요율의 8%	
	병	기본요율의 5%	
3. 가반식동력 소화펌프	소방자동차	기본요율의 15%	
	기타	기본요율의 8%	
4. 자동화재 정보 설비		기본요율의 8%	
5. 자동화재 속보 설비		기본요율의 5%	
6. 스프링클러 설비	갑	기본요율의 60%	
	을	기본요율의 40%	
	병	기본요율의 20%	
7.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전역방출 방식	자동	기본요율의 20%
		수동	기본요율의 10%
	국소방출 방식		기본요율의 8%
	호스·노즐방식		기본요율의 5%
8. 전기소화설비		기본요율의 5~18%	
9. 한분 1301 소화설비	전역방출 방식	자동	기본요율의 20%
		수동	기본요율의 10%
	국소방출 방식		기본요율의 8%
	호스·노즐방식		기본요율의 5%

〈표 3〉 포소화설비 할인률표

설비 종류		할인률	
		단독으로 설치된 경우	우외포호스·노즐이병설립된 경우
1. 고정포방출구(고정설비)		기본요율의 15%	기본요율의 18%
2. 포해드(자동)			
3. 고정포방출구(반고정설비)		기본요율의 10%	기본요율의 13%
4. 포해드(수동)			
5. 가반포방출판		기본요율의 5%	-
6. 우외포호스·노즐		기본요율의 5%	-
7. 우내포호스·노즐		기본요율의 5%	-

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이중 포(거품) 소화설비의 할인률은 설비종류 및 소방능력, 관리상태등을 감안하여 〈표 3〉과 같은 할인률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소화설비 할인률을 적용할 때의 유의사항으로서는,

첫째, 소화설비 할인은 초기소화설비를 명설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인데 참고로 초기 소화설비규정은 「소화설비(소화전설비, 가반식동력 소방펌프설비, 자동화재정보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등)의 할인전제조건으로 소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화재에 적응할 수 있는 초기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법기준중 와화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상기 규정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의 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새로 검사를 받아야 이 할인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건물 및 그 수용·동산외의 물건에 대하여는 한국보험공사 사장의 인가를 별도로 받은 경우에만 할인율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넷째, 2종이상의 소화설비가 명설된 경우 이들의 할인률은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섯째, 소화설비 할인을 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 할인특별약관」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참고로 「소화설비 할인특별약관」은,

“1. 아래에 표시된 건물에 시설된 소화설비는 검사에 합격하여 소정의 할인요율을 적용하였으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이 설비를 더 유효하게 보존하여야 합니다.

2. 위 1의 설비가 조사기준에 미달되거나 가능이 징지 또는 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우리회사에 자체없이 알리고 소정의 추가보험료를 내어야 합니다”라고 약정되어 있는 것이다.

여섯째, 가반식동력소방펌프중 소방자동차의 할인률적용대상은 1구내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정부가 지정한 공업단지내에서 공동으로 출자설비한 소방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출자자의 구내 모두를 할인률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일곱째, 위 할인규정에 없는 소화설비에 대한 할인률은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는 별도로 심의인가절차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다. ■